
- 2018년 의회 특별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18년 의회 특별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4건	주의 3 시정 1	추징	140,000	
1	○○○○○	20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40,000	
3	○○○○○	2016~ 2017	카드 사용부 관리 소홀	주의			
4	○○○○○	2016~ 2017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5건		1,145,000
2017.01.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오찬비	135,000
2017.03.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470,000
2017.04.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오찬비	186,000
2017.05.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185,000
2017.08.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오찬비	169,000

나.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2건		1,380,000
2017.01.11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만찬비	910,000
2017.03.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470,000

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2건		1,162,000
2017.06.01	****공통경비	제***회 *** 주요사업장답사 **** 오찬	592,000
2017.07.04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만찬	570,000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및 의회비”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다. 또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오찬 및 회식’ 등 5건 1,145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내부공무원인 직원 격려목적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과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직원 격려 만찬’ 등 2건 1,380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3만5천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주요사업장답사 **** 오찬’ 등 2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4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4건					미소화 140
2016.01.04	*** 임차	*****	1,658	-	40	-40
2016.02.18	***** 전자제품 구입	***** (주)	1,340	-	20	-20
2016.12.20	** *** ** (내·외피) 제작 구입비	*****	1,800	-	25	-25
2017.01.11	*** 임차료	*****	2,228	-	55	-5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임차’ 등 총 4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4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40천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카드 사용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신용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 미기재 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원)	비고
계	111건	37,209,490	
신용카드	65건	15,438,120	
현금영수증 카드	46건	21,771,370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금액,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 (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월분 차량 유류비 지출’ 등 총 65건 15,438,120원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로 집행하여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접대요금료 및 다과 구입비’ 등 총 46건 21,771,370원을 지출하면서 현금지출증빙을 통하여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지침에 의거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통한 예산집행 시 카드 사용대장 기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내역

연 도	계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누락	검사조서 누락	서식사용 부적정	비고
2016년~2017년	17건	3건	5건	9건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1항에 따르면 “제 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

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1항에 따르면 “제 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천정 및 ***** 벽체 석면철거 공사’ 등 3건 93,591천원을 지출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징구 등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삼척시** ***** 환경개선공사’ 등 5건 32,241천원을 지출하면서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사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9건 18,623천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하나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